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 확대 및 벌칙 강화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8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등 목적성 요건 삭제 및 유형·범위 확대	2
2. 외국인의 국외 침해행위등 처벌	13
3. 벌칙 요건 완화 및 벌칙 기준 상향	15
4. 몰수형, 미수·예비·음모죄 처벌 및 법인 양벌규정 신설	22
※ 참고자료	26
참고1.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침해행위등 유형 비교	26
참고2.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벌칙규정 비교	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등 목적성 요건 삭제 및 유형·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침해행위등”) 금지 유형 중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을 전제로 하는 행위 유형(현행법 제15조제2호, 제6호, 제7호)에 대해 ‘목적성’과 같은 주관적인 인식·의사를 성립요건으로 삼지 않도록 하고(안 제15조제2호, 제3호 및 제8호),

접근권한자가 전략기술을 지정장소 외 무단유출하거나 권한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의 부정취득·유출(안 제15조제1호·제2호) 또는 보유·사용·접근권한자의 무단보유·권한일탈(안 제15조제3호·제4호)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전략기술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시 승인제도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시정명령(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미이행하는 행위를 각각 침해행위등 유형으로 신설하며(안 제15조제4호, 제6호 및 제9호),

제3자가 부정취득·유출(안 제15조제1호·제2호)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현행법 제15조제3호·제4호)을 보유·사용권한자의 무단보유, 접근권한자의 무단유출(안 제15조제3호·제4

호)된 전략기술 등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금지범위를 확장함(안 제15조제5호, 제11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u>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 ----- ----- ----- <u>전략기술</u> ----- ----- -----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3. ----- ----- ----- ----- ----- ----- ----- -----

현행	개정안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 받고도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u> <u><신 설></u> 3. <u>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 <u><신 설></u> 5. (생략) 6. <u>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u> <u><신 설></u>	----- ---이를----- ----- 4. <u>전략기술보유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전략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u>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u>-----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6.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u>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u>제13조제1항</u>----- ----- ----- 9. <u>제12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7</u>

현행	개정안
8. (생략)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u>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우선, 현행법 제15조는 침해행위등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 제6호, 제7호는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전략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표 2] 침해행위등의 유형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u>으로 전략기술을 <u>유출</u>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u>사용 또는 공개</u>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그런데 단순히 기술 사업성 및 가치 등을 인식하고 침해행위등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없고, 이같은 목적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으면 구체적인 행위자의 직업, 경력, 행위와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목적성 여부를 판단¹⁾하게 되므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관시사항】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로, 침해행위등의 성립요건 중 ‘목적성’은 실무상 입증부담이 큰 편임.

최근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업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유출 방식은 단순 도면·문서 유출에서 핵심 기술인력 전직 유도,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목적성을 입증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목적성’을 침해행위등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전략기술을 유출·침해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침해행위등의 처벌 실효성과 기술유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동 법률에 따른 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보다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기술보호법」 보다 보호 및 관리 수준이 낮지 않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2025년 「산업기술보호법」²⁾은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를 개정하여 ‘고의성’ 또는 ‘목적성’과 무관하게 침해행위등을 모두 금지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주관적 인식이나 의사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고 유출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산업기술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1 참조).

다음으로, 안 제15조제4호, 제6호 및 제9호는 각각 침해행위등 유형을 신설하여 전략기술 침해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태를 발생·확대시키거나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자 함.

먼저, 안 제15조제4호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장소 외 무단유출 또는 권한 외 사용·공개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5조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취득한 기술을 무단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2)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안 제15조제2호에서 계약 또는 「산업기술보호법」³⁾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주·과건업체 실무자 등 업무상 접근권한은 부여되었으나 비밀유지의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공개하여 관리·통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도 제2호의 침해행위에 포섭되는지 불분명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접근권한자에 의한 무단유출 또는 사용·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15조제6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사용·공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개(제1호)하거나 비밀유지의무자가 전략기술을 유출·사용·공개 또는 제3자 사용하는 경우(안 제2호), 보유·사용권한자가 권한소멸 후에도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지 않는 경우(안 제3호), 접근권한자가 무단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공개하는 경우(안 제4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침해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한 제3자도 처벌하고자 함.

현재 침해행위등 발생시 이를 소개·알선·유인한 제3자는 「형법」에 따라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소개행위 등만으로는 교사나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 침해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이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및 처벌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5조제9호는 제12조제4항4), 제13조제5항 및 제7항5)에 따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등)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 전략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시 미승인·부정승인되었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인수·합병으로 판단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략기술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등 유형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미 수출 또는 인수·합병된 경우에는 전략기술이 실제로 부정하게 유출·사용·공개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조사·입증하여야 기존 침해 행위등의 유형으로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실제 입증과정상으로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기술유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위험상태를 지속하는 행위 자체를 침해행위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정조치가 조속하게 이행되어 위험상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제재하려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5조제5호 및 제11호는 타인이 현행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전략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였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전략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미 침해된 전략기술을 제3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가활용 및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5호 및 제11호는 이러한 금지범위에 보유·사용·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통제 기준을 위반하여 무단보유·무단유출하는 행위 등 (안 제3호 및 제4호)까지 포함함으로써 직접적인 유출·사용·공개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위험상태를 금지하고 전략기술의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이는 기술의 유출 경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취득·사용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시장 참여자 전반의 경각심과 선량한 주의의무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외국인의 국외 침해행위등 처벌

개정안은 침해행위등 금지규정이 외국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하는 침해행위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5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조에 따라 속지주의(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처벌)를 기본으로 하되, 동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음⁶⁾.

그리고 동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란·외환등 이외의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행위지의 법률을 존중하여 이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⁷⁾.

6)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7)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즉, 외국인이 침해행위등을 외국에서 범하더라도 현지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가 제기되더라도 「형법」 제6조단서조항에 따른 형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라 해외인수·합병 등 국제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을 해외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현지 법률에 따른 규율에 의지하기 보다,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외국인의 국외 침해행위등을 처벌하도록 명시하여 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벌칙 요건 완화 및 벌칙 기준 상향

개정안은 행위자가 주관적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침해행위등을 범하여 중한 범정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목적성’이 아닌 ‘고의성’을 요구하도록 벌칙의 구성요건으로 완화하고, 벌금형 상한을 8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러한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그리고 주관적 인식이나 의사 없이 침해행위등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침해행위등 유형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제3항·제4항 및 제8항).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u>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u>	제50조(벌칙) ① <u>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u> ----- ----- ----- <u>85억원</u> ----- -----.
② <u>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u>	<삭 제>

현행	개정안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신설>	③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 -----. ④ 제15조제10호 또는 제11호-----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우선, 현행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침해행위등을 한 경우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동법동조제3항 및 제4항은 목적성·고의성 등 주관적 인식 없이 침해행위등을 한 경우⁹⁾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목적성’이 아닌 ‘고의성’으로 벌칙 요건을 완화하고 벌금 상한 상향 및 병과규정 신설 등 벌칙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8) 현행법 제4호(→안 제11호, 중대한 과실 있는 제3자)의 침해행위는 제외

9) 현행법 제6호(해외인수·합병 부정승인 등)의 침해행위는 제외

[표 5] 현행법-개정안간 벌칙 규정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목적성 →고의성	① 1~3호 → 5년 이상 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병과)	① 1~10호→ 5년 이상 징역 + 85억원 이하 벌금 병과 (② 삭제)
	② 5~8호 →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주관적 인식無	③ 침해행위등(4호·6호(부정승인 인수합병)·8호 제외)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③ 1~9호 → 좌동(병과가능)
	④ 4호(중대한과실有제3자) ·8호(목적외 정보사용·공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④ 10·11호 → 좌동(병과가능)

이 중 ‘목적성’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업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유출 방식은 단순 도면·문서 유출에서 핵심 기술인력 전직 유도,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목적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벌칙의 구성요건 중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전략기술임을 알면서도 유출·침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침해행위등의 처벌 실효성과 기술유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¹⁰⁾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10)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하여 벌칙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동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보다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벌칙의 구성요건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벌금형 상한 상향 및 고의적인 침해행위시¹¹⁾ 벌금형 병과의 무화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은 벌금형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 또는 30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으나 현행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전략기술 유출시 부과하는 벌금 상한이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¹²⁾.

침해행위등의 위험성 및 전략기술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략기술 유출시 벌금 상한이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금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두 법률간 제재수준 균형 및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안 제11호(중대한 과실 있는 제3자)의 침해행위는 제외

12) 참고로 고의적 유출·침해시 동 법률에 따른 징역형 상·하한은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엄격하게 규정됨.

[표 6] 「산업기술보호법」-동법간 벌칙 기준 비교

구 분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전	현행('25.7.22.~)	현행	개정안
제1항	(국가핵심기술) 1~3호 → 3년 이상 징역 & <u>15억원 이하 벌금 병과</u>	(국가핵심기술) 1~12호 → 3년 이상 징역 & <u>65억원 이하 벌금 병과</u>	① 1~3호 → 5년 이상 징역 + <u>20억원 이하 벌금(병과)</u>	① 1~10호→ 5년 이상 징역 <u>+ 85억원 이하 벌금 병과</u> (② 삭제)
제2항	(산업기술) 제4호 제외 → 15년 이하 징역 또는 <u>15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u>	(산업기술) 1~6호&12호 → 15년 이하 징역 또는 <u>3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u>	② 5~8호 → 20년 이하 징역 또는 <u>20억원 이하 벌금</u>	

다음으로, 주관적 인식 없이 침해행위등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0조제3항은 목적성· 고의성이 없는 침해행위에 대해 대부분(현행법 제15조제4호·제6호·제8호 제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침해행위 중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정취득·유출된 전략기술을 사용·공개한 경우(현행법 제15조제4호)나 소송등의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취득한 자가 목적외 사용·공개하는 경우(현행법 제15조제8호)는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수준과 적법한 취득경로 등을 고려할 때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현행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3항보다 낮은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¹³⁾.

개정안 제50조제4항은 조문이동만 반영하여 책임수준이 비교적 낮은 안 제10호 및 제11호(현행법 제4호 및 제8호)를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개정안 제50조제3항은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던 해외인수·합병 부정승인 등의 경우(안 제15조제8호←현행법 제15조제6호)도 포함함으로써 승인절차를 우회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된 경우를 처벌하여 해외인수·합병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침해행위 유형 전반을 포괄하여 처벌하도록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은 침해행위 유형의 신설·확대에 맞추어 주관적 인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략기술 침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합성있게 정비한 것으로 보임.

[표 7] 현행법-개정안간 침해행위등 유형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안 제1호 (≒현행)	부정취득·사용·공개	좌 동
안 제2호 (≒현행)	<u>목적성</u> &보유자·비밀유지의무자가 유출·사용·공개·제3자 사용	보유자·비밀유지의무자가 유출·사용·공개·제3자 사용

13) 참고로 부정승인된 해외인수·합병 등(현행법 제15조제6호)의 경우에는 즉시 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성이 있는 경우만 현행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되 목적성·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안 제3호 (←현행제7호)	<u>목적성</u> &보유자·비밀유지의무자가 권한소멸 후에도 미반환·미삭제	보유자·비밀유지의무자가 권한소멸 후에도 미반환·미삭제
안 제4호	신 설	접근권한자의 무단유출, 목적외 사용·공개
안 제5호 (←현행제3호)	1~2호 행위&고의&제3자 사용·공개	1~4호 행위&고의 &제3자 사용·공개
안 제6호	신 설	1~4호 행위를 소개·알선·유인
안 제7호 (←현행제5호)	전략기술 수출시 미승인·부정승인	좌 동
안 제8호 (←현행제6호)	<u>목적성</u>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시 미승인·부정승인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시 미승인·부정승인
안 제9호	신 설	산업통상부 시정명령(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미이행
안 제10호 (←현행제8호)	소송등 전략기술정보 취득자가 목적외 사용·공개	좌 동
안 제11호 (←현행제4호)	1~2호 행위&중과실 &제3자사용·공개	1~4호 행위&중과실 &제3자사용·공개

마지막으로, 안 제50조제1항은 고의성이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안 제50조제8항은 목적성·고의성이 없는 처벌규정(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병과함으로써 인신상·재산상 불이익을 동시에 주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를 의무화함으로써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4. 몰수형, 미수·예비·음모죄 처벌 및 법인 양벌규정 신설

개정안은 침해행위등을 한 범죄자에 대해 범죄재산을 몰수하고(안 제50조제6항 신설), 고의성 있는 침해행위등과 고의성·목적성이 없더라도 처벌수준이 높은 침해행위등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며(안 제50조제7항 신설),

미수범 처벌 대상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0조의2 신설), 침해행위등으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 등에게도 해당 처벌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의3 신설).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0조(벌칙) ① ~ ⑤ (생략) <u>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u><신설></u>	<u>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u><신설></u>	⑧ (생략)
<u><신설></u>	<u>제50조의2(예비·음모) ① 제50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u>

현행	개정안
<신설>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범죄재산 몰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침해행위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징역형·벌금형 병과와 함께 범죄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침해행위 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억지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미수죄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침해행위

등과 고의성·목적성이 없더라도 처벌수준이 높은 침해행위등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하고자 함.

실제 기술 유출에는 실패하였더라도 착수단계에서 이미 기술보호·관리체계가 약화되고 국가·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상태가 초래되므로, 유출결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개정안과 같이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예비·음모죄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 대상인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즉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이를 위한 계획과 공모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침해행위등의 계획·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략기술 보호·관리체계의 약점이 노출되고 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데, 전략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예비·음모 단계에 대해서도 이를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등을 한 경우 행위자 본인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함.

침해행위등은 행위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경쟁 기업 등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1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침해행위등 유형 비교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전	현행('25.7.22.)	현행	개정안
[1호]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	[1호] (개정 전과 같음)	[1호] 전략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	[1호] 현행과 같음
[2호]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 유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	[2호] 고의요건 삭제	[2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호] 목적요건 삭제
[6-3호]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보유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의 삭제, 반환요구 등을 거부	[3호] 목적요건 삭제	[7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3호] 목적요건 삭제
(신설)	[4호] 산업기술 접근권한자의 지정장소 밖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신설)	[4호] 접근권한자의 지정장소 밖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3호] 제3자가 1~2호 사실을 알고 산업기술 취득·사용·공개	[5호] 제3자가 1~4호 사실을 알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3호] 1~2호 사실을 알고	[5호] 1~4호 사실을 알고
(신설)	[6호] 1~4호 행위를 소개·알선·유인	(신설)	[6호] 1~4호 소개·알선·유인
[5호] 국가핵심기술 미승인·부정승인 수출	[7호] (개정 전과 같음)	[5호] 미승인·부정승인 수출	[7호] 현행과 같음
(신설)	[8호] 국가핵심기술 미신고·부정신고 수출		
[6호] 국가핵심기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미승인·부정승인 M&A	[9호] 고의요건 삭제	[6호]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8호] 목적요건 삭제
[6-2호] 국가핵심기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미신고·부정신고 M&A	[10호] 고의요건 삭제		
[7호] 국가핵심기술 불법수출 등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 불이행	[11호] (개정 전과 같음)	(신설)	[9호] 불법수출 등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 불이행
[8호]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은 자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공개	[12호] (개정 전과 같음)	[8호] 목적외 용도 사용·공개	[10호] 현행과 같음
[4호] 제3자가 1~2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산업기술 취득·사용·공개	[13호] 제3자가 1~4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4호] 제3자가 1~2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11호] 제3자가 1~4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참고 2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벌칙규정 비교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전	현행('25.7.22.시행)	현행	개정안
①국가핵심기술을 <u>외국 사용 목적으로</u> 제14조 1~3호 침해행위자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병과	① <u>외국 사용을 알면서</u> 제14조 1~12호 침해행위자 3년 이상 징역,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①전략기술을 <u>외국 사용목적으로</u> 제15조1~3호 침해행위자 5년 이상 징역,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① <u>외국 사용을 알면서</u> 제15조 1~10호 침해행위자 5년 이상 징역, 85억원 이하 벌금 병과
②산업기술을 <u>외국 사용목적으로</u> 제14조 각호(4호제외) 침해행위자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② <u>외국 사용을 알면서</u> 제14조 1~6호 침해행위자(1항제외) 15억원 이하 징역, 30억원 이하 벌금	②전략기술 <u>외국 사용목적</u> 제15조 5~8호 침해행위자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삭제)
③제14조 침해행위자(4, 6, 6-2, 8호제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③제14조 1~11호 침해행위자 10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③제15조 침해행위자 (4,6,8호제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③제15조 1~9호 침해행위자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④제14조4,8호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④제14조 12,13호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④제15조 4,8호 침해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④제15조 10,11호 침해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⑤제10조제5항 행위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⑤(현행과 같음)
⑤1~4항 범죄행위자 재산 몰수	⑤ (개정전과 같음)	(신설)	⑥1~3항 범죄행위자 재산 몰수
⑥제34조 비밀누설자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⑥ (개정전과 같음)		
⑦1~3항 미수범 처벌	⑦ (개정전과 같음)	(신설)	⑦1~2항 미수범 처벌
⑧2~4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⑧ (개정전과 같음)	(신설)	⑧2~3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